

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(제3조의3 관련)

제조업	한국표준 산업분류	비고
1. 과일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	103	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2.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	105	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
3. 떡, 빵 및 과자류 제조업	1071	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.
4.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	10794	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5. 생수 생산업	11202	세병(洗瓶)·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.